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elcomes requests for permission to reproduce or translate its publications, in part or in full. Applications and enquiries should be addressed to the Office of Publications,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which will be glad to provide the latest information on any changes made to the text, plans for new editions, and reprints and translations already available.

ISBN 92 4 154160 1

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81

Publication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njoy copyright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rotocol 2 of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ll rights reserved.

The designations employed and the presentation of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do not imply the expression of any opinion whatsoever on the part of the Secretaria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any country, territory, city or area or of its authorities, or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its frontiers or boundaries.

PRINTED IN SWITZERLAND
5035-5864-8753-8458-9935-12405-12940-13290-14517-56500
2003/14950-Nove-5000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

초판 1쇄 인쇄 _ 2009년 8월 27일
초판 1쇄 발행 _ 2009년 8월 31일

지은이 · 세계보건기구
옮긴이 · 대한모유수유의사회 정유미
펴낸곳 · 대한모유수유의사회 | 등록번호 · 제319-2009-6호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69-8 대립상가 A동 2층 214-2호
전화 · 3487-8275 | 팩스 · 525-1593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의 한국어판 저작권을 대한모유수유의사회에 부여하였으며, 이는 한국어판에 국한됩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제네바

서문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수년간 영유아 건강과 영양 증진의 한 방법으로 모유수유 실천 유지의 — 또한 그 실천이 쇠락하고 있는 곳에서 이의 부흥이 갖는 —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모유수유를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방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은 두 단체의 전반적인 영양 및 모자 건강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2000년까지 모든 인류의 건강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차 건강 관리의 주요 요소이다.

다양한 요소들이 모유수유율과 모유수유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1974년 제27차 세계보건총회는, 세계 많은 지역에서 전반적인 모유수유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이것이 공업적으로 제조된 모유대체품 판촉을 포함하여 사회문화 및 기타 다른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원 국가들이 유아 식품에 대한 판촉 활동을 검토하여 필요 시 광고 규약과 법제화를

포함한 적절한 개선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¹

1978년 5월 제31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이 문제가 재차 상정되었다. 회의 권고안에는 회원국들이 영유아 영양실조를 예방하는 데 우선권을 두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모유수유를 지지하고 증진하며,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법적, 사회적 조치를 취하고, “모유를 대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영아용 식품의 부적절한 판촉을 규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²

영유아 섭식 관련 문제들에 관한 관심과 이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당연히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의 범위를 넘어 확대되었다. 각국 정부, 전문협회들, 과학자들과 영아 식품 제조업자들 역시 영유아 건강 증진을 향한 일 단계로 국제적 규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1978년 후반,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은 공동으로 이러한 의견의 큰 여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체 내 기존 프로그램 안에서 영유아 섭식에 관한 회의를 조직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참여를 극대화할 방법을 철저히 검토한 후 1979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제네바에서 회

의가 소집되었으며 각국 정부, 국제연합 체제 내 단체들과 기타 정부 간 기구, 비정부단체, 영아 식품 산업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 대표 약 150여 명이 참가하였다. 모유수유 증진과 지원, 지역 식품 자원을 이용한 적합하고 시기에 알맞은 이유식 섭식의 장려 및 지원, 영유아 섭식에 관한 교육, 훈련 및 정보의 강화, 영유아 건강 및 섭식과 관련하여 여성의 건강과 사회적 지위 향상, 모유대체품의 적절한 판촉과 배포 등 다섯 가지 주요 주제에 관하여 토의가 이루어졌다.

1980년 5월 제33차 세계보건총회는 이 세계보건기구/유엔아동기금 합동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한 성명과 권고문을 그대로 온전히 승인하였으며, 특별히 “영아용 조제분유와 모유대체품으로 이용되는 기타 제품들의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제시하고 “회원 국가들과 그 외 모든 관련 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그러한 규약을 마련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촉구하였다.³

세계보건총회의 요구에 따라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을 개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지루한 회의가 수없이 진행되었다. 1979년 10월 회의에 대표로 참가한 세계보건기구 회원 국가들과 단체 및 개인들에게 규약의 여러 초안에 대한 논평을 요구하였으며, 1980년 2월과 3월, 다시 8월과 9월에 추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세계보건

¹ Resolution WHA27.43 (*Handbook of Resolutions and Decisions of the World Health Assembly and the Executive Board*, Volume II, 4th ed., Geneva, 1981, p.58).

² Resolution WHA31.47 (*Handbook of Resolutions and Decisions... Volume II, 4th ed., p.62*).

³ 부록 2에 제시된 resolution WHA 33.32를 참조할 것.

기구와 유엔아동기금은 규약 초안의 형식과 내용 양자에 관하여 지속적인 대화를 이끌고, 1979년 10월 회의에서 합의한 요점들을 최소한의 기초적인 내용으로 남겨두기 위한 노력 안에서 그들 자신이 모든 단체들의 뜻에 따랐다.

1981년 1월, 세계보건기구 이사회는 제67차 회의에서 규약의 네 번째 초안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였으며, 제34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의문을 법규보다는 권장 형태의⁵ 규약으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권고하였다.⁴ 1981년 5월 이사회 대표의 상정을 거쳐 세계보건총회는 이 문제를 토론에 붙였다.⁶ 5월 21일 찬성 118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제안한 대로 규약이 채택되었다.⁷

⁴ 부록 1에 제시된 resolution EB67.R12를 참조할 것.

⁵ 규약을 권장하거나 법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법적 의미는 제34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세계보건기구 총장이 발표한 규약에 관한 보고에서 논의되었다. 이 보고문은 부록 3, WHA34/1981/REC/1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⁶ 이사회 대표의 제안 성명 초록은 부록 3을 참조할 것.

⁷ 규약이 채택된 resolution WHA34.22 본문은 부록 1을 참조할 것. 1981년 5월 21일 제15차 본회의 토의 축어 기록(verbatim record)은 WHA34/1981/REC/2 문건을 참조할 것.

차례

| | |
|------------------------------------------------------------------------|----|
| 서문 | 5 |
| 모유대체품 관측에 관한 국제 규약 | 11 |
| 부록 1. | |
| 모유대체품 관측에 관한 국제 규약을 위한 제67차 회기 집행이사회와 제34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 31 |
| 부록 2. | |
| 영유아 섭식에 관한 제3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 37 |
| 부록 3. | |
| 모유대체품 관측에 관한 국제 규약 초안에 관하여 제34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발표된 집행이사회 대표의 발제 성명 발췌록 | 43 |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

목차

서문

제1조 규약의 목적

제2조 규약의 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정보와 교육

제5조 일반 대중과 어머니들

제6조 보건의료체계

제7조 의료요원

제8조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

제9조 표시 사항

제10조 품질

제11조 시행 및 감시

세계보건기구 회원 국가들은:

모든 어린이와 임신하고 젖을 먹이는 모든 여성에게 건강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영아의 영양부족이 교육의 결여, 가난, 사회적 불의라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영유아의 건강이 여성들의 건강과 영양, 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어머니로서의 역할로부터 격리될 수 없음을 깨닫고;

모유수유가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이상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둘도 없는 방법이며; 모유수유가 어머니와 아기 둘 다의 건강을 위한 유일무이한 생물학적, 정서적 기본을 형성하며; 모유의 항감염 특성이 영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모유수유와 임신 터울 간에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모유수유의 장려와 보호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증진에 요구되는 건강, 영양 및 기타 사회적 대책의 중요 부분이며; 모유수유가 일차 보건의료의 중요한 측면임을 인식하며;

어머니들이 모유수유를 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모유수유를 할 때는 영아용 조제분유와 이를 제조하는 데 적합한 재료를 구할 합법적인 시장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제품은 모두 영리적, 비영리적 유통 체계를 통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이 모유수유 보호와 증진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판촉 혹은 유통되지 말아야 함을 숙고하여;

더욱이 부적절한 섭식 방법이 모든 국가에서 영아의 영양부족, 질병률 및 사망률을 높이고, 모유대체품과 관련 제품 판촉에서의 부적절한 관행이 이러한 주요 공중보건 문제들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일반적으로 4~6개월이 되었을 때 영아들에게 적절한 이유식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식품을 사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확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식이 모유대체품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함을 인식하며;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있으므로 각 국 정부는 이를 보호하고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개발해야 하며; 모유수유를 육성하고, 가족과 공동체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며, 모유수유를 억제하는 요인들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을 올바르게 인식하며;

보건의료체계, 그 안에서 일하는 의료전문가들과 기타 의료요원들이 영아 섭식 관행을 지도하고,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촉진하며, 모유수유의 우수한 가치나, 필요 시 산업적으로 생산되었던 가내 제조되었던 간에 영아용 조제분유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객관적이고 일관된 조언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함을 확인하며;

더 나아가 모유수유 보호와 증진, 이유식의 올바른 사용에 교육 체계와 기타 사회 서비스가 관여해야 함을 주장하며;

가족과 지역공동체, 여성 단체와 기타 비정부단체들이 모유수유 보호와 증진에, 그리고 모유수유 유무에 상관없이 영유아의 어머니와 임산부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확보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각국 정부와 국제연합체계 내 조직들, 비정부단체들과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소비자단체와 산업체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과 영양 증진을 향한 활동에 협력해야 함을 확인하며;

각국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건강, 영양 및 기타 사회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본 규약이 그러한 조치들 중 단지 한 측면에 관계된다는 점을 인식하며;

모유대체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영아 섭식과 관련하여, 그리고 본 규약의 목표 증진과 이의 적절한 구현에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국 정부가 법률, 법규 혹은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제정한 것을 포함하여, 본 규약의 원칙과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그들의 사회적, 법적 체제와 전반적인 발달 목표에 적합한 활동을 취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며;

앞서 말한 고려 사항들에 입각하여, 그리고 생후 첫 수개월간 영아들의 취약성과, 불필요하고 부적합한 모유대체품 사용을 포함하여 부적절한 섭식 관행에 포함된 위험들을 고려하면, 모유대체품 판촉에는 특별한 취급이 요구되어 일반적인 판촉 행위는 이들 제품에는 맞지 않다고 믿으며;

따라서:

회원 국가들은 이로써 행동에 대한 근거로서 권장할 다음 조항들을 승인한다.

제1조 (규약의 목적) 본 규약의 목적은 모유수유 보호와 증진을 통해, 그리고 필요한 경우 충분한 지식에 입각하여 적절한 판촉과 배포를 통해 모유대체품의 올바른 사용을 확보하여, 영아들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영양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제2조 (규약의 범위) 본 규약은 다음 제품들의 판촉 및 그와 연관된 제반 행위에 적용된다: 영아용 조제분유를 포함한 모유대체품; 변형을 가했거나 완제품 형태 그대로 모유의 일부 혹은 전체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촉 혹은 표시되고 있는 기타 유제품과, 우유 병으로 먹는 보완식을 포함한 식품 및 음료; 수유용 병과 인공 젖꼭지. 또한 본 규약은 이들의 품질 및 이용 가능성과 이들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정보에도 적용된다.

제3조 (정의) 본 규약의 목적상:

- “모유대체품(Breast-milk substitute)”은 그 용도의 적합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유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것으로 판촉 혹은 표기되고 있는 모든 식품으로 정의한다.
- “보완식(Complementary food)”이란 모유나 영아용 조제분유가 영아의 영양 요구량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품화한 것이거나 지역 내에서 제조된 것이건 간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식품은 “이유식” 혹은 “모유 보조식”이라고 부른다.
- “용기(Container)”란 포장지를 포함하여 일반 소매 단위 판매를 위한 모든 형태의 상품 포장을 의미한다.
- “판매업자(Distributor)”란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되는 제품의 도소매 판

매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개인이나 법인, 혹은 기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단체를 의미한다. “일차 판매업자”는 제조회사의 판매 대리인, 대표자, 전국 대리점, 중개인을 말한다.

- “**보건의료체계(Health care system)**”란 어머니와 영아, 임산부의 건강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부, 민간 혹은 사적 기관이나 조직; 유아원이나 보육 시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또한 개업하고 있는 의료 요원도 포함된다. 본 규약의 목적상 약국이나 기타 상설 판매점은 보건의료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의료요원(Health worker)**”이란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전문적이건 비전문적이건 간에, 위에 정의한 보건의료체계의 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영아용 조제분유(Infant formula)**”란 4~6개월까지의 영아에게 필요한 정상 영양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코덱스 알리멘타리우스(Codex Alimentarius) 기준에 따라 산업적으로 제조하여, 그들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변화시킨 모유대체품을 말한다. 영아용 조제분유를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가내 제조”라 한다.
- “**표시(Label)**”란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제품의 용기(위의 정의 참조)에 기록, 인쇄, 등사, 표시, 각인, 압인, 혹은 부착된 정가표, 상표, 표지, 사진, 혹은 기타 묘사물을 모두 의미한다.
- “**제조업자(Manufacturer)**”란 본 규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나 업무에 (직접적으로, 혹은 중개인이나 계약을 맺은 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법인, 혹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단체를

말한다.

- “**판촉(Marketing)**”이란 제품의 판매 촉진, 배포, 판매, 광고, 홍보 및 정보 제공을 의미한다.
- “**판촉종사자(Marketing personnel)**”란 본 규약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제품의 판촉이 본인의 직능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 “**견본품(Samples)**”이란 무료로 제공되는 단일 혹은 소량의 제품을 말한다.
- “**보급품(Supplies)**”이란 장기간 사용을 위하여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사회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제품을 말하며, 빈곤한 가정에 공급하는 것도 포함된다.

제4조 (정보와 교육)

4조 1항 각국 정부는 영유아 영양 분야 종사자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 섭식에 관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만 한다. 이러한 책임에는 정보의 계획, 준비, 설계, 보급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감독도 포함되어야 한다.

4조 2항 임산부나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영아 섭식에 관한 정보와 교육 자료는, 그것이 문서화된 것이든 시각 혹은 청각적인 것이든 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 모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 (가) 모유수유의 이득과 우월성;
- (나) 어머니의 영양과 모유수유 준비 및 유지;
- (다) 부분 인공수유 시작이 모유수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라) 모유수유를 포기하기로 한 결정을 되돌릴 때의 어려움; 그리고
- (마) 산업적으로 제품화된 것이든 가내 제조된 것이든, 필요 시 영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적절한 사용법.

이러한 자료들에 영아용 조제분유 사용법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을 때는 그 사용에 따른 사회적, 재정적으로 함축된 의미 — 즉 부적절한 제품 및 섭취 방법의 건강상 폐해, 특히 영아용 조제분유나 기타 모유대체품을 불필요하거나 그릇되게 사용했을 때의 건강상의 위험 — 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에는 모유 대체품 사용을 이상화하는 어떠한 형상이나 문구도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조 3항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나 교육 기구 및 자료의 제공은 해당 정부 당국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서면 인가를 받거나, 이 목적을 위해 각국 정부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르는 경우에만 이행되어야 한다. 제공하는 회사의 명칭 혹은 로고를 이러한 기구 및 자료에 표시할 수는 있으나,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개별 제품을 언급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보건의료체계를 통해서만 배포해야 한다.

제5조 (일반 대중과 어머니들)

5조 1항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제품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 광고 및 기타 다른 형태로 판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조 2항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제품의 견본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임산부나 어머니 혹은 그 가족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5조 3항 5조 1항 및 2항에 근거하여,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 광고 및 견본품 제공, 소매 수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특수진열, 할인쿠폰, 경품, 특별판매, 특매품, 또는 끼워팔기 등 기타 모든 형태의 판촉행위는 금지된다. 본 규정이 장기적으로 낮은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가격 정책이나 관행의 확립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5조 4항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 어머니에게 모유대체품 사용이나 인공수유를 촉진할 수 있는 물품이나 도구 등을 절대로 선물로 주어서는 안 된다.

5조 5항 판촉종사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본인의 업무상 자격으로, 임산부나 영유아 어머니와 어떠한 접촉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제6조 (보건의료체계)

6조 1항 회원국의 보건당국은 모유수유를 장려, 보호하고 본 규약의 원칙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의료요원에게 4조 2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여 본인의 책임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6조 2항 보건의료체계 시설은 절대로 영아용 조제분유나 기타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제품의 판촉을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7조 2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규약이 의료전문가에 대한 정보 보급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6조 3항 보건의료체계 시설은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제품의 전시나, 그러한 제품들과 관련된 벽보나 포스터 또는 4조 3항에서 명시한 바 이외의 목적으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공한 자료를 배포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6조 4항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파견하거나 그들로부터 보수를 받는 “전문서비스 판매대리인”이나 “보육 간호사” 또는 이와 유사한 직종을 보건의료체계에서 기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조 5항 제품화된 것이든 가내 제조된 것이든, 영아용 조제분유 수유는

의료요원이나,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타 지역사회 요원만이 그 제품을 사용해야만 하는 어머니나 그 가족구성원에게만 시연할 수 있으며, 또한 제공되는 정보에는 부적절한 사용의 위험에 대한 명료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6조 6항 영아용 조제분유나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제품을 기관 내 사용 혹은 기관 외부에 배포할 용도로 기관이나 조직에 기증 혹은 저가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이러한 보급품은 모유대체품을 먹여야 하는 영아에게만 활용되거나 배포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급품의 해당 기관 외부로의 배포는 반드시 관련 기관이나 조직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이러한 기증이나 저가 판매를 판촉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6조 7항 기증된 영아용 조제분유나 기타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제품의 보급품을 기관 외부로 배포할 경우, 기관과 조직은 해당 영아가 본 제품을 필요로 하는 기간 내내 이를 공급할 책임이 있다. 관련 기관과 조직뿐 아니라 기증자도 이러한 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6조 8항 4조 3항에 언급된 내용에 덧붙여, 보건의료체계에 기증된 기구 및 자료에는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로고를 표시할 수 있으나,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개별 제품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 (의료요원)

7조 1항 의료요원은 모유수유를 증진, 보호해야 한다. 특히 모자 영양에 관계된 사람은 4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본 규약에 명시된 본인의 책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7조 2항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제품에 관하여 보건전문가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반드시 과학적, 사실적 내용에 국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인공수유가 모유수유와 동등하거나 우월하다는 생각을 암시하거나 유발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에는 반드시 4조 2항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7조 3항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제품의 판촉을 목적으로 경제적 혹은 물질적으로 의료요원 및 그 가족을 유인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의료요원이나 그 가족이 이를 수락해서도 안 된다.

7조 4항 영아용 조제분유 및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제품이나, 제품의 조제 및 사용을 위한 기구 혹은 도구 견본품은, 관계기관 수준에서 전문적 평가 및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요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의료요원은 임신부나 영아의 어머니, 혹은 그 가족에게 영아용 조제분유 견본품을 주어

서는 안 된다.

7조 5항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의료요원에게 찬조금을 지급하거나, 장학금, 학회여행 비용, 연구기금, 전문학회 참석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반드시 그 내역을 해당 의료요원이 소속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 수혜자들 역시 이에 상응하는 보고를 해야 한다.

제8조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

8조 1항 판촉종사자를 위한 판매 장려 제도 내에서,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제품의 판매량을 보너스 계산에 포함시키거나, 이들 제품의 판매에 대해 별도의 할당량을 책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회사에서 판매되는 타 제품의 전반적 매출에 기초를 둔 보너스 지급을 막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8조 2항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제품의 판촉에 고용된 사람은, 직업적 책무의 일환으로 임신부나 영유아 어머니와 관련된 교육적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해당 정부 당국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서면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체계가 이들을 다른 직무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9조 (표시 사항)

9조 1항 표시는 제품의 적절한 사용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면서, 모유 수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안되어야 한다.

9조 2항 영아용 조제분유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명확하고 눈에 잘 띄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각각의 용기마다, 혹은 용기에서 쉽게 분리할 수 없는 표에 적절한 용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가) “중대 경고”나 그에 상응하는 용어;

(나) 모유수유의 우월성에 관한 내용;

(다) 해당 제품의 사용 적응증 및 적절한 사용 방법에 관하여 반드시 의료요원의 조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

(라) 적절한 사용법 및 잘못 사용 시의 건강상 위험에 대한 경고.

용기나 표시에는 영아의 사진이 들어가서는 안 되며, 영아용 조제분유 사용을 이상화할 수 있는 모양이나 문구를 넣어서도 안 된다. 단 해당 제품이 모유대체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거나, 제품을 조제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안은 허용된다. 그러나 “모유화된”, “엄마 같은”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제품 및 제품의 적절한 사용법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담은 전단지를 포장이나 소매 단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품을 영아용 조제분유로 변형시키는 사용법에 관한 표시사항도 상기 내용을 따라야 한다.

9조 3항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식품 가운데 영아용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영아용 조제분유로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를 위해 변형할 수 있는 제품은, 변형되지 않은 제품 형태로는 영아의 단독 영양으로 부적합하다는 경고를 표시 사항에 명시해야 한다. 기당농축 우유는 영아용 식품으로도, 영아용 조제분유의 주요 성분으로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로 변형시키는 사용법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내용을 표시사항에 명시해서는 안 된다.

9조 4항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식품의 표시에는 다음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가) 사용된 원재료;

(나) 제품의 성분/분석;

(다) 요구되는 보관 조건; 그리고

(라) 제품 번호와 해당 국가의 기후 및 보관 조건 하에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기한

제10조 (품질)

10조 1항 제품의 품질은 영아들의 건강 보호에 필수 요소이므로 인정되는 높은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10조 2항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식품을 판매, 배포할 때에는 반드시 코덱스 알리멘타리우스 위원회 및 영유아 식품 위생 업무에 관한 코덱스 규약이 권장하는 적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1조 (시행 및 감시)

11조 1항 정부는 국가의 법률, 규칙 및 기타 적절한 조치의 제정을 포함하여 본국의 사회 및 법률적 체제에 적합한 방식으로, 본 규약의 원칙과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는 필요 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아동기금 및 유엔 조직 내 기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법률이나 규칙을 포함하여 본 규약의 원칙과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시책이나 조치를 공식 발표해야 하며,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11조 2항 본 규약의 적용에 대한 감시는 독자적으로, 그리고 11조 6항

및 7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공동으로 활동하는 각국 정부의 책임이다.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자, 관련 민간조직, 전문가 집단과 소비자단체는 모두 이 목적을 위하여 정부에 협력해야 한다.

11조 3항 본 규약의 시행을 위한 어떤 다른 조치와 별도로,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자는, 자신의 판매행위를 본 규약의 원칙과 목적에 따라 감시하고, 본인의 행위가 모든 단계에서 필히 그에 따르도록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11조 4항 민간조직이나 전문가 집단 혹은 단체 및 관련된 개인은 본 규약의 원칙과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에 제조 및 판매업자의 관심을 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또한 해당 정부 당국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11조 5항 본 규약의 범위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일차 판매업자는 판촉종사자 개개인에게 본 규약과, 그에 입각한 자신의 책임을 알려야 한다.

11조 6항 세계보건기구 헌법 제62조에 따라 회원국은 본 규약의 원칙과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활동 현황을 해마다 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1조 7항 사무총장은 본 규약의 시행 상황에 관해 세계보건총회에 짝 수 해마다 한 번씩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요청이 있을 시 회원국이 본 규약의 원칙과 목적 시행 및 증진을 위해 국내법이나 규칙을 준비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록 1_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을 위한 제67차 회기 집행이사회와 제34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Resolution EB67.R12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 초안

집행이사회는,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 초안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를 숙고하여;

1. 사무총장이 마련한 국제 규약 초안을 온전히 인증한다;
2. 국제 규약 초안을 제34차 세계보건총회에 상정한다;

3. 제34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다음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1981년 1월 28일

[집행이사회가 권고한 문서가 1981년 5월 21일 제34차 세계보건총회에서 WHA 결의안 34.22로 채택되었으며, 다음 면에 게재하였다.]

WHA 결의안 34.22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

제34차 세계보건총회는,

소아와 성인의 장래 건강과 발달을 위한 건전한 영유아 영양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모유수유는 영아 섭식의 유일하고도 자연스런 방법으로서 모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해야 함을 상기하며;

회원 국가 정부들이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영유아 건강 증진 방법으로서 모유수유의 보호와 장려에 주요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신하며;

모유대체품이 영아 섭식 방법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자각하며;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법규를 포함하여 영아 섭식의 보호와 증진이 영유아 건강에 직접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고, 세계보건기구에 직접적인 중요성을 갖는 문제임을 확신하며;

사무총장이 입안하고 집행위원회가 세계보건총회에 상정한 모유대체

품 관측에 관한 국제 규약 초안을 심사 숙고하여;

사무총장과 국제연합아동기금 국장에게, 회원 국가들과 국제 규약 초안 준비 과정에서 기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긴밀한 협의가 보장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바에 감사를 표하며;

그 후 즉시 제67차 회의에서 집행이사회가 체결한 권고안을 숙고하여;

1979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던 영유아 섭식에 관한 세계 보건기구/유엔아동기금 합동 회의에서 채택된 성명과 권고안에 대한 온전한 인준을 포함하여 WHA 결의안 33.32를 추인하며;

모유대체품 관측에 관한 국제 규약의 채택과 준수가 영유아 섭식 측면에서 건강한 관행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여러 중요한 활동 가운데 단 하나이며 최소한의 요건임을 강조하며;

1. 헌법 제23조의 뜻에 입각하여, 본 결의안에 부속된 모유대체품 관측에 관한 국제 규약을 채택한다;

2. 모든 회원 국가들에게 촉구한다;

(1) 영유아 섭식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유엔아동기구 합동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안과 세계보건기구 회원의 집단 의사 표현으로서의 국제 규약 조항들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전폭적인 만장일치로 지원하고;

(2) 국제 규약을 국내 법률, 법규 혹은 기타 적절한 조치로 변환하고;

(3) 모든 관련 사회, 경제 분야와 기타 모든 관계 부처를 국제 규약의 구현과 그에 따른 조항들의 준수에 참여시키고;

(4) 규약 준수를 감시할 것을;

3. WHA 결의안 33.17의 정신에 입각하여 본 결의안 구현의 추적과 검토를 지역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세계보건총회에서 수행할 것을 결정한다;

4. 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코덱스 알리멘타리우스 위원회에, 운용 권한의 테두리 안에서 영아 식품의 품질 기준을 증진시키고 국제 규약의 구현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해 취할 활동을 완벽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5. 사무총장에게 요구한다:

(1) 국제 규약 구현을 위해, 특히 WHA 결의안 33.32의 활동 소문단 6(6)에 따라 국내 법률과 기타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요구가 있을 시 그대로, 회원 국가들에게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 (2)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 규약의 구현과 감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중재한다;
- (3)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규약의 준수와 실행 현황에 대해 제36차 세계보건총회에 보고한다;
- (4) 현황 보고의 결론을 기반으로 하여, 필요 시 규약 원문의 개정과 이의 효과적인 적용에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한다.

1981년 5월 21일

부록 2_영유아 섭식에 관한 제3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WHA 결의안 33.32

영유아 섭식

제33차 세계보건총회는,

어린이의 조화로운 신체적, 심리사회적 발달을 위해 모유수유가 이상적이며, 모유수유 증진과 그 지역 제품에 기반을 둔 이유식의 준비와 이용에 관련된 행동 개발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사무총장의 시급한 활동이 요구되며, 나라마다 유아식에 관한 판매 촉진 행위를 검토하고 수유 기간 동안 집 밖에 나가 일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 대책을 취할 뿐 아니라 광고 규약과 법률을 포함하여 적절한 개선책을 도입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특별히 재천명하는 WHA 결의안

27.43과 WHA 결의안 31.47을 상기하며;

2000년까지 전 인류의 건강 획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차 보건의료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모자 건강을 강조하는 추가적인 WHA 결의안 31.55와 WHA 결의안 32.42를 상기하며;

영유아 섭식과 사회 경제적 발달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 분야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 훈련, 그리고 정보를 통해 영유아와 어머니들의 건강과 영양 증진을 위해 정부의 긴급한 활동이 요구됨을 인정하며;

세계보건기구/유엔아동기금 합동 회의가 1979년 10월 9일부터 12일 까지 개최되었으며, 각국 정부, 유엔 산하 기구와 기술적 기관들, 이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비정부단체들, 영아식 산업체,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기타 과학자 대표들이 참여하였음에 유념하며;

1. 세계보건기구/유엔아동기금 합동 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서와 권장안을 온전히 그대로 추진한다. 즉 다시 말해 모유수유 장려와 지원; 적절한 이유식 방법의 증진과 지원; 교육, 훈련과 정보의 강화; 영유아 섭식과 관련한 여성들의 건강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모유대체품의 적절한 판촉과 분배에 관한. 이 성명서와 그러한 권장안들은 또한 이 분야에서 보건 서비스, 의료인, 국가 기구, 여성 및 기타 비정부기관, 유엔

기구와 영아식 산업체에 지워진 의무를 분명히 하며, 국가가 일관된 식품, 영양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성과 임산부 및 수유모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합동 회의는 또한 “영아용 조제분유와 모유대체품으로 사용되는 기타 제품들의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이 존재해야 한다. 수출국과 수입국 양자 모두 이를 지원해야 하며 모든 제조업자들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은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로, 이의 준비를 위한 과정을 조직할 것을 요청한다”고 권고하였다;

2.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이 이들 권장안을 구현할 목적으로 이미 집행하였던 중요한 활동과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 초안 마련을 위해 수행하였던 준비 작업을 인정한다;

3. WHA 결의안 27.43과 WHA 결의안 32.42를 아직 검토하고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검토,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4. 여성 단체들에게 모유수유와 건강 습관 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정보 보급 캠페인을 조직할 것을 촉구한다.

5. 사무총장에게 요구한다;

- (1) 수입과 판촉 기간뿐 아니라, 해당 국가 내 생산 과정에서도 영아식 품질 관리를 위한 감독과 조절에 있어 요구 시 회원국가들과 협력한다;
 - (2)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법률, 법규와 기타 조치들에 관한 정보 교환을 도모하고 지원한다;
6. 더 나아가, 세계보건기구/유엔아동기금 합동 회의 권장안의 적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신의 활동을 특히 다음 측면에서 강화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구한다:

- (1) 건강한 소아 성장 및 발달의 필수 조건으로서 안전한 이유식과 이유 방식뿐 아니라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 (2) 그러한 지원이 필요한 나라에서 그 지역 제품에 기반을 둔 이유식 마련과 관련된 활동의 증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여타 국제 기구나 쌍무적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성공적으로 이용되는 이유식과 이유 방식 체계에 관한 정보를 모아서 보급한다;
- (3) 그 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지역과 국가 내 일차 의료 요원들을 위한 소책자를 통해 훈련과 기타 영유아 섭식에 관한 보건 교육, 훈련과 정보 분야 활동을 강화한다;
- (4) 회원 국가들과, 협력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과학 및 기타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여타 모든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을 준비하며 다음을 명심한다:

- (ㄱ) 모유대체품과 이유식 판촉은 영유아 섭식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전체로서 고찰하여야 한다;
 - (ㄴ) 규약의 목적은 영유아를 위한 안전하고 적합한 영양 공급에 공헌하고, 특히 모유수유를 증진하고 적합한 정보에 근거하여 필요 시 모유대체품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 (ㄷ) 규약은 현존하는 영아 영양 지식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ㄹ) 규약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 (i) 영아 식이 제품의 광고뿐 아니라 생산, 보관 및 배포는 국내 법률이나 법규 혹은 관련 국가에 적합한 기타 조치들을 따라야 한다;
 - (ii) 영아 섭식에 관한 관련 정보는 그 제품이 소비되는 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제공해야 한다;
 - (iii) 제품들은, 특히 코덱스 알리멘타리우스 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품질과 표시의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표시 사항은 일반 대중에게 모유수유의 우월성을 명시해야 한다;
- (5) 제67차 회기에서 심리하고 이의 권장과 실현에 관한 제안으로서, 세계보건기구 헌법 제21조 및 제22조의 뜻에 따라 규정으로, 혹은 헌법 제23조의 뜻에 따라 권장으로 할지, 각각의 선택권에 따른 법적, 그 외 내포된 의미의 윤곽을 그리면서 그 권장안을 제34차

세계보건총회에 회송하기 위해 규약을 집행 이사회에 제출하는 바이다:

- (6) 특히 직장 여성들의 모유수유를 가능하게 하고 지지하기 위한 다른 국가 내 현존하는 법률을 검토하고, 그러한 법률을 개발하는 데 회원 국가들의 요구가 있을 시 협력할 수 있는 기구의 역량을 강화한다;
- (7) 1981년 제34차 세계보건총회와 그 이후 짝수 해마다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영유아 섭식을 증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취한 조치들에 관한 보고를, 세계보건기구와 그 회원 국가들이 취한 모든 조치들의 효과 평가와 함께 제출한다.

1980년 5월 23일

부록 3_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 초안에 관하여 제34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발표된 집행이사회 대표의 발제 성명 발췌록¹

1980년 5월 제3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영유아 섭식”이라는 주제가 광범위하게 검토 및 토의되었으며, 금일 오전에도 역시 상세히 토의되었다. 대표들은 이러한 취지의 작년 WHA 결의안 33.32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다른 과제들 중에서도 사무총장에게 “회원 국가들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의 긴밀한 협의 하에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을 준비할 것을” 촉구하였던 바를 상기할 것이다. 그러한 규약과 이를 근거로 규약을 개발할 원칙들의 필요성이 그에 따라 작년 세계보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² 그러므로 우리의 심의에서 금일 이러한 재고와 토의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¹ 집행위원회 대표인 Torbjørn Mork 박사(노르웨이 의료서비스 국장)의 이러한 성명은 1981년 5월 20일 A 위원회 전에 발표되었다. A위원회 제13차, 14차, 15차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이 주제에 관한 토의 요약 보고는 문서 WHA 33/1981/REC/3에 포함되어 있다.

² 문서 WHA33/1980/REC/1, 부록 6; 문서 WHA33/1980/REC/2 327 페이지; 그리고 문서 WHA33/1980/REC/3 67~95 페이지와 200~204 페이지를 참조할 것.

위원회 앞에는 금일 두 가지 문제가 놓여 있다: 첫째, 규약의 내용; 둘째, 규약을 세계보건기구 헌법 제21조 및 22조의 뜻에 따라 규정, 혹은 헌법 제23조의 뜻에 따라 권장으로 채택할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제 위원회 앞에 A34/8 문서로 제시된 제안은 규약의 네 번째 초안이다; 이는 유엔아동기금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회원 국가들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수행하였던 오랜 토의 과정의 결과이다. 설사 있었다 해도 과거에 집행위원회와 세계보건총회 앞에서 그 어떤 문제도 이 초안 규약만큼 그토록 광범위하게 자문을 구했던 적은 없다.

.....

1981년 1월, 제67차 회기 중 본 항목에 대한 집행위원회 토론 가운데, 많은 회원국들이 스스로 규약의 목표와 원칙들을 청원하였으며, 현재 초안으로 만들어진 바와 같이, 이것이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최소한의 만족스러운 조건을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늦은 시점에도, 최근 신문 기사에 반영되었듯이, 규약의 내용, 특히 그 범위에 관하여 일부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본인은 규약의 범위가 위원회의 토론 중 어려움의 원천이 아니었음을 대표단들께 서둘러 상기시키는 바이다.

초안 규약의 범위는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생애 첫 4~6개월 동안,

정상적인 영아의 영양 요구를 유지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모유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시기에 모유는 영아용 조제분유를 포함하여, 선의의 모유대체품으로 대체(대용)될 수 있다.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첫 시기 이후 영아에게 제공되는 우유, 과일 주스, 시리얼, 야채 혹은 기타 다른 음료, 고형식 혹은 반고형식 식품 등 그 어떤 음식도 더 이상 모유에 대한 대체품으로 (혹은 그 선의의 대용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식품들은 모유나 모유대체품을 보완할 뿐이며, 따라서 규약 초안에서는 보완식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또한 흔히 이유식, 혹은 모유 보충식으로 불린다.

영아용 조제분유를 포함하여, 선의의 모유대체품 이외 제품들은 그것들이 “모유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것으로 판촉 혹은 표기될” 때만 규약에 포함된다. 따라서 모유의 일부 또는 전체의 대체품으로 이용되는 제품에 대한 언급들은 만약 이들 식품들이 — 영아용 조제분유를 포함하여 모유대체품이 판촉되듯이 — 실제로 모유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촉되지 않는 한 보완식에 적용할 의도는 아니다. 그러한 제품들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들이 이것들을 모유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것으로 판촉하지 않는 한, 광고와 기타 판촉 활동 제한에 관한 규약의 조항들은 이들 제품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위원회는 규약 초안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였다.³ 몇몇 이사들이

| ³위원회 토론의 요약 보고서는 문서 EB67/1981/REC/2의 306~322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강화하고 더욱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안 도입을 고려할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특히 개발도상국의 형세를 고려할 때, 제34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규약을 채택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이며, 현 단계에서 수정안이 도입된다면 규약 채택 연기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규약의 여러 조항들을 실현하면서 얻어지는 경험에 비추어 빠른 시일 내에 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뿐더러 심지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금번 제34차 세계보건총회가 현재 초안대로 규약을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권고하였다. 이는 결의안 EB67.R12에 포함된 권장 결의안의 효력 발생 문단 5(4)에 반영되어 있다.

집행위원회 앞에 놓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규약의 채택을 권장 혹은 규정으로 권해야 하는지이다. 몇몇 이사들이 세계보건기구 헌법 제21조 및 22조의 뜻에 따라 규정으로 채택하는 쪽으로 분명한 선호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위원회 내에서 국제 규약의 필요성이나 그 범위 혹은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반대의 목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장 대 규정의 문제에서는 의견이 나누어졌다.

규약의 형태에 관한 어떤 결정이라도 어떤 대안이 규약의 목적 실현의 더 나은 가능성 — 즉, 영유아 영양과 건강 증진에 공헌하는 — 이 있을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정된 권장이 갖는 도덕적 힘이 회원 국가들로부터 만장일치

의 지원을 받지 못한 규정보다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규약의 실현은 현존하는 세계보건기구 헌법 절차에 따라 면밀히 감시하고; 앞으로 있을 총회에서 회원 국가들의 보고에 비추어 상황을 평가하고; 이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총회에서 취해야 할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토론 중에 제기되었던 서로 다른 요점들을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한 끝에, 위원회는 세계보건총회가 채택을 권고하였던 결의안 초안을 포함하여 결의안 EB67.R12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점에 대해, 본인은 결의안 초안에 약속된 책임, 즉 본 규약이 채택되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위해 회원 국가들과 지역 위원회, 사무총장, 집행위원회, 그리고 세계보건총회 자신의 책임에 위원회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바라는 바이다.

자신들의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회원 국가들은 —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 국가 법률, 법규 혹은 기타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규약의 적용을 감시하는 데 있어 기술적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그들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이것이 위원회에 의해 세계보건총회에 만장일치로 권고되었으므로 본

인의 서론을 결의안에 대한 합의를 청원하는 것으로 마침으로써 위원회의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일 우리는 하나 또는 몇몇 회원 국가에만 특별히 중요한 경제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회원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필수적으로 중요하고, 전세계 어린이들과 따라서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다.